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9.8.22.(목) 16:00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상식 의원 등 31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 이유

○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지원(안 제5조)

라.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6조)

마. 충청북도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에 문제가 없어 제정은 타당함.